

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사유

폐기물의 수집·운반단계에서부터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엄격히 구분하여 혼합 처리를 예방하고자 2008년 7월 1일부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함에 따라 관련조항 신설 및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함

2. 관련법령

「폐기물관리법」 17조, 제1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, 제7조
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

“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감량의무사업장 쓰레기종량제 추진계획”
(부산광역시)

3. 주요골자

가.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 조항 신설(안 제6조의 3)

나. 쓰레기봉투의 용도·색상에 관한 조항 신설

(안 제9조제1항, 제2항, 제4항)

다. 사업장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기준 명시(안 제11조제1항, 제2항)

라.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13조제3항)

4. 검토의견

본 조례 일부개정 건은

- 해마다 늘어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일반생활폐기물과 분리 수거하여 사업장용봉투를 사용함으로써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의 재활용에 크게 기여하고
- 수집운반체계의 투명화와 현장부조리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폐기물관리의 효율성확보와 대민 봉사행정구현에 일조가 된다고 생각되며
- 또한 부산광역시와 수영구에서는 기히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고 부산진구, 남구, 해운대구에서는 입법예고 등 준비 중에 있으며
- 특히 「폐기물관리법」 등 관련법령과 환경부 지침 등에 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수수료 부과·징수와 쓰레기봉투의 용도·색상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

위 조례 일부개정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

2008. 5. 26

도시전문위원 정 금 배